

- “공비 부담 의료 수급자 신고서”

국가 및 자치단체가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비 부담 의료 수급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. 공비 부담 의료 수급자가 요양 급부를 받는 경우, 규정에 따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(수급자증 사본)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십시오.